○ (대출조건)

구분	대출 조건
대출한도	(직접·대리대출) 연간 6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 (이차보전) 융자계획 공고 Ⅱ.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(p7)
대출기간	(직접·대리대출, 시설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 (직접·대리대출, 운전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 (이차보전) 융자계획 공고 Ⅱ.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(p7)
대출금리	(직접·대리대출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+ 0.5%p * (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(이차보전) 융자계획 공고 II.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(p7)
기 타	•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을 원칙(시설자금의 50% 이내) * 단, '25년 상반기는 한시적으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• 별표3(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, p44)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•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(기업 수행)

□ 혁신성장지원자금(협동화자금)

- (대상) 공동생산시설,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아래의 중소기업
-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
-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

※ 협동화사업 우대 사항

- 업력 제한 없음
- 별표1 '융자제외 대상업종' 中 산업단체(KSIC 94110)는 지원 대상에 포함
- 융자계획 공고 Ⅲ.유의사항(융자제한기업) ⑨항(소상공인) 적용 제외(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), ⑩항(부채비율 초과기업) 적용 제외
- (**융자방식**) 직접대출, 대리대출

○ (대출조건)

구분	대출 조건
대출한도	연간 10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)
대출기간	(직접·대리대출, 시설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5년 이내) (직접·대리대출, 운전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
대출금리	(직접·대리대출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기 타	•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•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•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(기업 수행)

□기타

- '혁신성장지원자금' 지원 시,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생산,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
 - 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
 - 지식서비스산업(참고6)
 -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 · 스타트업 100 ·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
 - 원전 협력 중소기업(단, 사업계획 및 지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)